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경보통제소 및 재난상황실의 상황관리 요원과 안전점검 기동반원, 건축물대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력과 함께
- 문화관광국·인삼특작과 설치에 따른 국·과장 요원의 증원과 인삼특작과 하부조직 구성을 위하여 기관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본청 정원 20명 증원(3급 1, 4급 1, 5급 4, 6급이하 14)
 - 기구 신설 - 2명(3급 1명 문화관광국장 요원
4급 1명 인삼특작과장 요원)
 - 경보통제소 - 5명(6급 이하 및 기능 5)
 - 재난관리 상황실 - 5명(5급 3, 6급 이하 2)
 - 안전점검기동반 - 8명(5급 1, 6급 이하 및 기능 7)
- 증평출장소 1명 증원(건축물대장 관리요원 7급)
- 기관간 정원 조정 : 사업소 △3명 → 본청 +3명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
□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참고 자료(근거 법령 내용) 1부. 끝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1호 본청 "937" 을 "960"으로, 제4호 사업소 "352"를 "349"로, 제5호 출장소 "232"를 "233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